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률 적용대상에 줄임쉼터 내 화장실 포함〉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47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30.
3. 회부연월일 :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변기의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

그런데, 졸음쉼터 화장실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청소·위생관리 의무 및 점검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시설 관리 수준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위생 불량 및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률의 적용 대상에 「도로법」에 따른 졸음쉼터를 포함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 ----- <u>휴게시설 및 같은 호</u> <u>바목에 따른 졸음쉼터</u>
7. ~ 17. (생략)	7. ~ 17. (현행과 같음)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의 범위를 규정하여,¹⁾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해당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는 대·소변기 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 변기,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변기 칸막이, 오수 및 분뇨 처리 등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함.²⁾

또한 공중화장실과 유료화장실에 대하여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에 대하여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관리 기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025년 6월 기준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총 248개소로, 현행법은 「도로법」 상 휴게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는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졸음쉼터 내 공중화장실등은 우선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구분		내용	근거
관리인	관리인 지정	- 공중화장실 장소·시설의 소유·관리자의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의무	법 제9조제1항
	위생교육	- 관리인의 위생교육 이수 의무	시행규칙 제5조·6조
위생	위생적 관리 및 연락처 게시	- 관리인을 통한 위생적 관리 - 관리인 연락처 게시 의무	시행령 제7조제1호
	소독	- 4월~9월 주 3회 이상, 10월~3월 주 1회 이상 소독 실시 의무	시행령 제7조제2호
	휴지통	- 대변기 칸막이 내 휴지통 구비 금지 - 예외 : 장애인용 화장실 및 기저귀교환대 설치 화장실	시행령 제7조제3호
	위생용품 수거함	-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내 수거함 비치 의무 - 예외 : 어린이 등 이용자	시행령 제7조제4호
기타	안내표시판	- 청소·보수 안내표지판 표시 의무	시행령 제7조제5호

한편, 국토교통부는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통해 졸음쉼터 내 편의시설로 화장실과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법용 CCTV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³⁾ 도로관리청은 화장실의 유지관리 방안을 마

3)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별표 4] 졸음쉼터 편의시설 설치기준 (일부)

구분	졸음쉼터 규모		
	소형 (주차면 10면 이하)	중형 (주차면 11~29면)	대형 (주차면 30면이상)
화장실	기본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여성화장실 비상벨	기본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방법용 CCTV	기본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련하여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줄음쉼터 내 화장실의 시설이 열악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줄음쉼터 내 화장실에 대하여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줄음쉼터 내 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줄음쉼터 내 화장실은 도로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된 도로의 부속물로서 시설물의 특성상 고속도로 휴게소와 달리 수시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상시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줄음쉼터 내 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되 지도·권고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개정안은 「도로법」에 따른 줄음쉼터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줄음쉼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8호)의 논의 경과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4) 황호영 기자, “최장 연휴 추석 ‘코앞’… 빈칸 없는 줄음쉼터 화장실”, 경기일보, 2025.09.22.,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921580315>, 2026.08.05. 최종확인.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은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줄음쉼터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 효율성, 설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행 제도 내에서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적절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50